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552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용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지범주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16.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가소31065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84,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67,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24. 경찰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한은행 직원 중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이 있어 이를 색출하려고 하니 협조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말하는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받은 3,2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두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원고를 기망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설치해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2,7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9. 4. 24.경 C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구매를 대행하여 주면 구매금액의 3%를 수수료(아르바이트 비용)로 선지급해주겠다’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그 무렵 C에게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는 2019. 4. 24. 17시경 원고 명의로 2,700만 원이 입금되자, 수수료 3%를 제외한 돈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구입한 다음 C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위 가상화폐를 송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9.

4. 25. 이체 상대방인 피고 명의 계좌의 예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피해금원 중 일부인 8,915,716원을 환급받았으나, 나머지 금원은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라. 수원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19. 6. 25. 피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1)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으나, 피해자인 원고의 신고로 거래정지가 되어 송금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구입한 후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환급받지 못한 피해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송금액 27,000,000원으로 구매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C의 지시에 따라 전송한 것은 C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의 방조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입금된 돈의 출처 및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그와 같은 입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가상화폐의 구매 및 전송을 유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특히 가상화폐를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고 차명으로 거래할 것을 의뢰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② 특히 피고가 C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가상화폐를 매매해온 기간이 길고 그에 대한 지식도 해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는 피고에게 중국인들이 직접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구매하여 달라고 피고에게 부탁하였는데도, 피고에게 돈을 입금한 송금인들은 모두 한국인들로 보이는바, 그러한 점에서도 피고와 C가 송금한다는 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③ 또한 C는 피고에게 입금되는 돈의 액수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돈이 얼마 입금되었는지를 오히려 피고에게 물어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은 근로를 제공한 후에 지급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입금 받은 돈에서 수수료 3%를

스스로 공제하고(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아르바이트 비용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요청을 받았는바, 피고가 C와 기존에 같이 일을 해본 적도 없고 C가 어느 법인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인지도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형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C는 중국인들을 위해 구매를 대행하는 회사가 위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는데 피고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들은 모두 개인명의였고 법인 명의로는 입금된 것이 전혀 없었다).

④ 원고를 보이스피싱의 형태로 기망한 성명불상자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의 돈을 송금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편취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수사기관 등이 이를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까지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는 순간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각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이후 편취금액이 은닉되고 추적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과정에 일조한 이상 원고의 손해 발생과 피고의 방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판단컨대,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홍보가 대대적으로 있는 상황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선불리 신뢰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금을 자신의 신한은행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놓은 점, 피고는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신고되어 거래가 정지되자 바로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협조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616,856원(= 원고의 잔존하는 피해금원 18,084,284원 × 2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인 2019.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동, 판사 이보람, 판사 구성훈

1) 피고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의 명의를 ‘C’로 보이거나 C의 신원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성명불상자로 지칭하여 수사하였다.